제19회(제022회)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 3 호

본회의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1958년1월30일(목)(단기4291년) 상오11시10분

의사일정

1. 제2차회의록통과
2. 보고사항
3. 서울특별시시립도서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특별부과금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호별세부가금조례안
7.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
8.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금고조례중개정조례안
9. 단기4290년도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요청의건
10. 단기4290년도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요청의건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시립도서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특별부과금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호별세부과금조례안
4.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
5.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금고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10분 개의)

○**의장 박명준** 출석의원 24인으로서 제19회임시회 제3차회의를개회하겠읍니다.

이제 회의록낭독이있겠읍니다.

(간사장 전차회의록낭독)

회의록낭독에 착오없읍니까?

(「없읍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통과되었읍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보고가있겠읍니다.

○**간사장 김형익**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단기429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예비지출 승인요청의건 지난12월31일자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본건을 제출해왔기때문에 이것을 문교재정 양위원회의 심의를부탁하겠읍니다.

둘째는 일반택시에 합승허용에 대한 건의에 대한 16회 임시회 2차회의에서 의결하여 시경에 이송한 본건에 대하여는 지난 1월12일자로 회답이왔읍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프린트」하고 있읍니다.

약10분후에 여러의원께 부탁해드리겠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명준** 오늘회의록에 서명해주실의원은 임종순의원 이응린의원으로 지명합니다.

다음은 이세보고사항에서 우리보고를 듣기전에 신임토목과장이 인사가 있겠읍니다.

○**토목과장 이제관** 금번 정부인사이동발령에의해서 토목과장직을 맡어보게된 「이제관」이라고 불러주십시오.

본래가 배운것도없고 우둔한 제가 이서울시의 토목행정을 맡게되니 이중책을 달할까 송구스러운마음 금할길이 없읍니다.

이중책 다하기 위해서는 미약하나마 제최선의 노력을 할각오를 가지고 있사오며 오로지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지도편달이 있으므로서 소기의 목적을 달

할가 하오니 아무쪼록이면 여러분들의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여 마지않는바입니다.

이상으로서 인사의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박명준** 다음은 건설위원회 소관을 이익렬의원이 보고해주시겠읍니다.

○**이익렬 의원** 건설분과의 청원을 보고드리겠읍니다.

건명은 만리동배수지 부근 상수도 가설신청입니다.

만리동에 상수도배수지가있읍니다.

그러나 배수지를 옆에다두고 그물을 상수도 가설을 못해서 저아래에가서 떠다먹든지 얻어먹든지 해야하기 때문에 대단히 곤란하다고 마포구 아현동 85번지 유한종외14명의 진정서가 들어왔읍니다.

그래서 조사위원은 김경원의원과 김재순의원이 가서 조사한 결과 이것을 채택해서 집행부로 이송하기로 결의했읍니다.

다음은 안암동 입구로부터 안암동동부「로 - 타리」앞까지 도로포장공사 청원이 들어왔읍니다.

그청원인은 성북구 안암동 121번지에 박승진외124명으로서 청원을냈읍니다.

그래서 조사위원은 김재순의원과 최봉수의원이 가본결과 본건은 자동차가 왕래시마다 황폐가되여 대단히곤란을 느끼고 자연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느끼므로서 이것을 해주어야 되겠다는 것을 결의한 이후 집행부에 이송하기로 결정했읍니다.

다음은 수송국민학교앞의 도로포장공사 청원의건 이것은 같은 것인데 세건이있읍니다.

안국동 국제전화소 앞까지 한국일보사 앞까지 또 자유당앞까지 남전도로 앞까지 또무교동입구까지의 도로포장공사를 해주십사해서 청원이 들어왔읍니다만은 이것은 금년도의 예산에 공사를 하기로 예정이 되어서 채택결의해서 집행부에서넘기기로했읍니다.

그리고 수송동 도로포장공사 진정이 또같은건인데 진정인이 달읍니다.

종로구「수린동」동장이외에 97명으로 왔읍니다.

다음에 한건은 수송동 도로포장공사 · · · · · · 이것 진정인데 · · · · · · 종로구 광교동장이외에 52명으로서 진정이 왔기때문에 이것이 원래에 해주기로 책정이되여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결의한결과 집행부의 이송하기로 결정을보았든 것입니다.

회의규칙 48조3항에의거해서 보고를 드렸읍니다.

○**의장 박명준** 다음은 이갑수의원의 보고가있겠읍니다.

○**이갑수 의원** 이보고사항이라고하면 의례히 집행부에 요청비슷한 또 잘알어주십사하는 말씀과 동시에 저는 의원들에게 주지사항이라고 볼수 있는데 · · · · · · 알려드리는 사항이라고 볼수 있는데 · · · · · · 특히 집행부 내무국장은 의회를 운영하는 주무국장이라고보아서 의회의 공기를 알어주시기위해서도 반드시아마 수시로 출석해주서야만이 저는옳치않을까 생각이들어갑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이자리에서 보고사항으로서 몇가지 말씀드릴것은 반드시 내무국장이 여기에 관심을 갖지않으면 안된다고하는데에서 한마디 말씀을드리는 것이니 의장께서는 연락을하서서 나올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지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몇가지를 말씀드릴가운데에 최근에 각구청을 통해서 동까지 내려가있는 군경원호회비 적십자회비 이것이 벌써 회의가 구성된이후에 두번세번 거듭 문제가되여가지고 사회적으로 여론이 분분했든것입니다.

역시 그 그시그시 내무국장으로하여금 답변은 이것이 어쨌든지 문제는 그저 그자리만 피해서 어물어물넘겨놓면 그만이다하는 것이 이것이 상례가되고 관례가되고 전례가 되여버렸단말이에요. 역시 그전 말보고서를 보드라도 그렇게하지않겠읍니다. 확언까지하고 확답까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찬가지에요. 그러니 믿을 수가 없단말이에요. 우리의 정단상에서 아무리 떠들어